第30輯 第2號

國際去来法硏究

국제거래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호

2021

國際去来法學會

國際去來法研究

국제거래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호

第30輯 第2號

2021

國際去來法學會

發 刊 辭

안녕하십니까.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장승화입니다. 국제거래법학회지가 30주년 기념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국제거래법 연구를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뜻있는 분들이 학회를 설립하여 서로의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연구성과를 발표해 온 것이 어느덧 30여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제법학회가 한 세대 동안 걸어온 길과 축적한 업적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미 지난 11월 3일에는 '국제거래법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국제거래법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본 국제거래법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당일 소중한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하여 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회지는 지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취지를 이어받아 30주년 기념호로 꾸며보았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설립 초기의 열정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료를 발굴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설립 초기의 열정과 취지를 되새김으로써 미래를 향한 더 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기념호에서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국제거래법학회의 설립 당시 상황과 국제거래법학회가 우리나라와 사회에 기여해 온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학회의 초대 회장이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과의 대담과 전임 회장님들의 회고록을 특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담 시간을 내어주시고 회고록을 준비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연구 흐름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의 전체 게재 논문 목록도 특집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논문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떤 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국제 경제의 흐름과 그와 관련된 법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이번 기념호에도 총 3편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김규진 박사님의 'CISG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 CISG 40주년,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며 -'는 CISG 40주년을 기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성립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국제건설계약과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은 국제건설계약과 해외투자개발계약 분야의 국내연구를 회고하고,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박사님의 '원전사업의 전반적인 위험배분과 대표적인 사례 소개'는 원전사업에 고유한 위험의 특성을 실무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계약 협상 및 체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난 30년간의 업적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보다 더 열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OVID-19로 인해 여전히 일상에 제약이 많은 겨울입니다. 모쪼록 회원 및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장 승 화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우선 먼저 장승화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계속 일취월장하고 있는 국제거래법학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이 중요한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역대 회장과 전직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학회의 30살 생일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자 "국제거래법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의 연구업적과 활동을 뒤돌아보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거래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학술대회를 주최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봅니다.

국제거래법은 법학의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학의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학문 분야임은 물론 경제학을 비롯한 인접 사회과학분야까지도 포섭하는 학제적이고 통섭적 분야입니다. 사실 본 학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에는 그 연구대상을 어떻게 획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을 수 없었으나 열린 마음으로 관련 분야를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미나도 역시 본 학회의 연구대상과 분야들을 무리 없이 다양하게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신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 발표주제별로 국내에 실정법 형식으로 기본법이나 관련 실정법이 있고 국제적으로 관련 조약이나 관례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비교 천착하여 장래의 해석과 운영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더욱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거래는 민간주도로 국부를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서 민주적 정치 절차와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했을 때 가장 번성한 역사적 예를 유럽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예와 연결시켜 볼 때 이 분야의 연구는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국제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모든 국제거래가 정부의 독점 내지 지나친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본질을 타협하지 않되 지나친 국수주의적 사고 보다는 열린 마음과 합목적적 사고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항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동되는 국내외 거래 동향에 맞게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타 다른 학회들과는 본질적으로 그 입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국내외 거래 환경에 맞춘 정책개발도 못지않게 필요하므로 여기에 본 학회의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끊임없이 들이닥친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거래법학회는 정부와 손을 잡고 당시에는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공무원들을 설득하면서 수출입에 바탕을 둔 한국경제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대적 사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정부주도의 관리무역제도에 터 잡은 무역거래법을 우리 학회의 주도로 전면 개정하여 민간주도의 자유무역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한 바 있습니다.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자 실정법의 소아복에 커

진 몸집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외환관리법 등 수많은 관련 법령을 모두 동시에 손질해주는 일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척박한 학문환경에서 하나의 학회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나라에 꼭 필요한 싱크탱크가 되도록 육성해나가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는 30년간 이만큼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공적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미래의 30년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많은 거래대상국을 선도해가는 학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본 추계학술대회에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셨으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유감이고 송구합니다만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거래법학회 창립회장
송 상 현

목 차

1부: 학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발간사 ····· 회장 장승화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 ····· 송상현 교수님

송상현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회장님 대담 ····· 장승화, 조인영, 이종혁, 임동민

명예회장님들의 회고담 ····· 이기수, 조대연, 손경한, 최준선
석광현, 김갑유, 김인호, 이영석

「국제거래법연구」 수록 논문 목록

2부: 투고논문

1. CISG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CISG 40주년, 국제거래법학회 30주년을 기념하며– ····· 김규진 / 1
2. 국제건설계약 및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정홍식 / 45
3. 원전사업의 전반적인 위험 배분과 대표 사례 소개 ····· 박상길 / 85

[부 록]

▶ 국제거래법학회 임원명단 (2021년 12월 현재)
▶ 국제거래법학회 활동일지
▶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활동일지
▶ 국제매매법연구회 활동일지
▶ 국제거래법학회 연구윤리규정
▶ 심당국제거래학술상 규정
▶ 국제거래법연구 편집 및 심사규정
▶ 국제거래법연구 논문기고 규정

송상현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회장님 대담

일　　시 : 2021. 11. 29. (월) 11:00~13:00
장　　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대 담 자 : 장승화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조인영 (국제거래법학회 총무이사, 연세대학교 교수)
이종혁 (국제거래법학회 기획이사, 한양대학교 교수)
임동민 (국제거래법학회 총무간사, 해군 법무관)

대담자 : 교수님께서는 국제거래법 분야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 미국 유학을 떠나 해상법을 전공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이 결심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송상현 :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고민을 하다가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어른들과 선배들에게 인사를 다녔어요. 저와는 나이나 학번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자기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지요. 그 선배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반도라는 점을 잊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법을 공부해라. 또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다와 관련된 법은 정말 많다. 공법 분야에는 국제해양법(The law of the sea)이 있고, 사법 분야로는 해상법(Maritime law)이 있는데 이 법을 모두 통섭하여 공·사법을 망라한 바다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보라. 너라면 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고도 엄청난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필칭, 우리가 다 장보고의 후손이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생각이 늘 머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주변에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하버드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미국 남부에 있는 튤레인대학에 갔어요. 저는 원래 대륙법 중에서는 프랑스법을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 당연히 영미법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튤레인이 이 둘을 다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는 거에요. 게다가 당시 미국에서도 해상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희귀했는데 튤레인은 해상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튤레인을 주저 없이 선택했어요.

맹장 꼬리처럼 아시아 대륙 끝에 달린 한반도가 그마저도 반으로 쪼개져서 북한이 위로 있고 그 위론 중국과 소련이 있어서 적성 국가들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그 당시 육로로는 불가능하니까 배를 타고 나가는 것 말고 비

행기를 타고도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상법을 공부하면서 항공법도 같이 공부했어요. 해상활동이나 항공활동이나 기업위험이 유사해요. 그래서 법체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항공법도 연계적으로 공부하였지요.

정말 공부는 하기 나름이에요. 전통적인 해상법만 배우면 해난구조다 공동해손이다 뭐다 아주 그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특정적인 쟁점만 공부하게 되어요. 미국에서도 해상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전문적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제 물동량이 매매되어 이동하는 과정을 좀 더 큰 안목으로 보자.' 해상법은 배에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만 다루니까 기술적이고 시야가 좁으니 좀 더 큰 시야로 국제 물동량이 이동하는 전체 과정을 거시적이고 복합적으로 보자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화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는 국제동산매매법이 적용되잖아요. 국제성이 있는 물건 매매계약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해요. 그 신용장을 들고 자기 거래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하거나 신용장 액수만큼 돈을 찾아서 그 돈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선적하죠. 그 뒤에 적하보험을 내죠. 물건을 선적하면 선주가 선하증권과 화환어음을 발행하죠. 그러면 배가 출발한 뒤 무사히 도착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선하증권도 받고 다 했으니까 수출에 대한 대금을 챙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물건 실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않고 전체의 국제 물동량의 흐르는 과정을 법적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안목으로 이렇게 좀 더 넓게 보면, 해상법 고유분야 외에 동산매매, 신용장 개설, 어음수표법, 국제법을 다 공부해야 해요. 이것이 국제거래의 실상이에요. 해상법만 좁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태도를 뛰어넘어서 국제거래의 전체 과정을 보는 훈련을 했어요. 해상법뿐 아니라 국제거래의 각 부분을 다 보면서 어떤 부분은 관습에 따라 성립된 규범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약에 따라 성립된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일단 해상법을 기본으로 해서 시야를 넓혀 나가다보면 국제 경제 관계를 총체적으로 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적인 해상법 그 자체만 보면 한정된 전문분야 외에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귀국하여 보니 해상법을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교과과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해상법을 가르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개설해서 해상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비교시과목이라 학생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저는 해상법에 함몰되어서 기술적 항목을 중심으로 지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국제거래를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르쳤어요. 저의 해상법 시간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국제거래법 시간이었지요.

대담자 : 교수님께서는 국제거래법학회를 창립하셨는데, 새로운 모임이나 학회를 만들어 활동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활동 초기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현 :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칼라 텔레비전을 미국에 처음 수출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LG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졌던 일인데, 어느 날 이에 대해서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의한 덤핑 관세를 부과했어요.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정부 관계자들이 도대체 덤핑 관세가 무엇인지, 왜 부과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 해당부처의 공무원 중에 제가 미국 유학중 공부하고 법실무에 종사한 구체적 배경을 아는 분이 다리를 놓아주면서 자문을 빈번하게 구했지요. 물론 공산품을 너무 싸게 수출하면 이에 대하여 덤핑관세를 부과하지만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수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용료를 지급함이 없이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여 수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문제에 걸려서 통상분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적소유권법을 공부한 송상현 교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그룹과 상공부 공무원들은 국익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했지요. 그때만 해도 지적재산권이니 로열티니 이런 말 자체가 없을 때였으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기초개념을 열심히 설명해주었지요. 더군다나 왜 지적재산권 침해가 국제통상의 이슈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의 번역을 따라서 '지적소유권'이라고 설명을 했었지요.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물론 영국, 스위스 이런 선진국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로열티 미지불 문제를 항의하는 통상사절단이 자주 왔어요. 그런데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응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전문용어도 생소하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되지요. 제가 항의하러 온 통상사절단을 수도 없이 응대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나아가서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거니, 당신들이 교육을 시켜야 깨우치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 장학금을 좀 내놓으라.'고 역공을 했지요. 돈 내놓으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학 보내서 지적재산권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돈도 좀 받아서 우리 학생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은 물론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으로 단기 유학 보낸 친구들이 많습니다.

폭풍이 좀 지나간 후에는 정부가 저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앞으로는 이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지적소유권학회'를 만들라고 해서 1986년 1월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지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재산권 법제를 보면 고종 황제 시절 또는 해방 직후의 법이었어요. 이 법을 다 근대화시켜서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전부 다 작업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이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었지요.

이 작업을 마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적소유권이라는 한정적이고 정태적 주제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다이나믹한 국제거래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총체적인 국제거래를 연구하고 국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의기투합했지요. 어느 날 고 김용환 변호사, 서헌제 교수, 손경한 교수, 김문환 교수, 김건식 교수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버티고 앉았어요. '당신이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저는 '지적소유권학회에서 진이 다 빠져서 못하겠다, 더 범위를 넓힌 학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을 것 같다.'고 고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장을 한 임기만 하겠다고 했었지요. 그때가 아마 1990년이었을 거에요.

창립대회를 열었던 장소가 국립의료원의 구내 뷔페식당이에요.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지어준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의 구내식당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클럽인데 그곳에서 창립대회를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외에도 고 신국환 국회의원, 이승웅 삼성물산 사장, 최공웅 부장판사, 조대연 변호사, 조태연 변호사, 박병무 변호사, 석광현 변호사, 이호원 판사가 참석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연어가 참 귀하고 뷔페가 드물었는데, 회원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리하자면, 통상압력을 막기 위하여 1986년 지적소유권학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게 발전해서 1990년 국제거래법학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네요.

대담자 :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회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송상현 : 국제거래법학회가 딱 창립된 후 얼마 안되어 하루는 상공부 국장이 저에게 오더니,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체계를 자유무역체계로 바꿀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때만 해도 그야말로 수출 일변도만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수입은 전혀 없고 수출만 해야 나라가 산다는 분위기였지요. 국가가 일일이 간섭해서 매 건마다 라이센스 주는 그런 방식으로 무역을 통제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무역규모가 커졌으니, 융통성있는 자유무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당시 기본법이 대외무역법이었어요. 이걸 우리 학회가 완전히 뜯어고쳐 주었어요. 그때 박병무 변호사와 몇 사람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법 하나만 고친다고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종 인허가, 실무적 규제들을 간소화시키면서 제도를 다 개선했고 그러다 보면 또 인접하는 법률, 예컨대 외국환관리법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까지 싹 작업해주었어요. 1년 이상 계속되는 너무너무 방대하고 고된 작업이었어요. 그때 국제거래법학회가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학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대담자 : 반면 지금 돌아보실 때에는 아쉬움이나 이런 것을 해 보았으면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요.

송상현 : 아쉬운 점은 많지만 특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개혁이 바로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이나 대학원의 세미나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살아있는 산학협동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교육현장이 늘 늦었어요. 그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대담자 : 심당학술상이 벌써 15회째인데, 심당학술상의 의의와 향후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현 : 심당학술상 이야기가 나오면 퍽 송구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마 2008년에 제정되었을 겁니다. 난데없이 손경한 교수, 서헌제 교수가 저의 아호를 붙여서 심당학술상을 제정했어요. 국제거래법뿐만 아니라 무역학이나 통상 분야를 포함해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쓴 사람에게 시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해버렸어요. 사전에 제 상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나에게는 너무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제가 국제거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바가 없으니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 고집쟁이들이 제1회 시상식을 진행해버렸어요. 그때 최원목 교수가 외교관을 그만두고 이화여대로 갔을 때인데 최원목 교수를 수상자로 해서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시상장소는 일부러 창립대회를 했던 스칸디나비아 클럽으로 했어요. 제1회 시상식 이후로는 제가 시상식에 가본 적이 없네요. 지금이야 법률 분야에서 상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법률 분야에서 상이 별로 없었어요. 내 아호를 붙였다는 게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업적을 잘 평가해서 상을 수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담자 : 국제거래법을 전공하는 후학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현 : 법학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예컨대 60년대 말에 해상분야에 컨테이너가 등장한 것은 해상법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요. 또 항해술이 발달하다 보니 선하증권 등의 기능이 아예 달라지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각 부분을 규제하는 규범이 교통,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숙고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대담자 :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축사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국제거래법학회의 의미와 역할이 학회 창립 초기와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법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나 도전할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상현 :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거래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란 것이 수출입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자 : 교수님께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법조인들의 국제적인 역할에도 큰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ICC, ICJ, WTO 등 국제기구에 진출을 꿈꾸는 젊은 법률

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송상현 : 국제기구에 왜 진출하려고 하는지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되죠. 국제사회 진출이 화려하고 대접받고 돈과 명예와 특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건 허황된 생각입니다. 외국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을 마다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나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인류 공통의 소망인 정의, 평화,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확립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그런 각오, 봉사정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준비해 두었다가 각 국제기구의 인턴, 직원 선발 공고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선배나 한국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담자 : 교수님께서 항상 품고 계신 좌우명이나 격언, 인생의 원칙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현 : 저는 무슨 요란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구축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서 꼭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후학을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눈을 높이 들어 국제사회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이 때로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50년간 계속해 왔는데, 우리 법조인들도 주변의 힘들고 병든 이웃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담자 : 법조시장과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최근 법조인들이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돌아볼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이를 극복하신 경험이 있다면 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현 : 저는 제가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현상을 직시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 공학한림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미래전략 2030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산업에 관한 것만 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세 가지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소위 세계화 현상이 트럼프가 와서 훼방 놓은 것을 계기로 해서 탈세계화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요. 즉 지정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국제거래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탈세계화 현상이 국제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대응 조치들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 그린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셋째는 4차 산업혁명의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화, 자동화, 지능

화를 아우르는 소위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정학적 대전환, 그린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이 세 가지입니다. 흐름이 이렇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집단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이 세 가지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혁신 기회를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방어하는 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민법 제1조가 어떻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트렌드를 빨리 찾아 혁신 방안을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법대 수업현장에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대담자 : 교수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끝]

회고담

어쩌다 학회장

제5대 회장
조 대 연

학회에서 금년 말 발간 예정인 국제거래법연구 제30집 제2호로 "국제거래법을 연구하는 후학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만한 선배 연구자 분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명예회장님들의 학회 30년사 회고담"을 기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솔직히 곤혹스러움이 느껴졌다. 그저 그런 느낌이었을 뿐 딱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우선 학회 장승화 현 회장께서 14대 회장이시니 전임 회장 분들이 많이 계신 중에도 명예회장은 창립회장이신 송상현 선생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전임회장님들 중 몇 분이나 회고담을 쓰실 생각을 할지 모르는 터에 '어쩌다 학회장(어장)'을 맡았던 사람이 구태여 나설 계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외부 활동 감각이 둔해져 많은 시간을 생각지도 않던 각종 국내외 학술 모임, 행사 등에 비대면 영상으로 그나마 비디오, 오디오를 꺼두고 참가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중재 심리를 하거나 사무실내 회의를 영상으로 대면 진행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이 쌓여 영상 대면조차 가급적 자제하게 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필자가 미국 예일대 로스쿨 유학에서 돌아 와 뒤늦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필자를 숨막히게 했던 유신 정국이 우연찮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끝나기 직전의 제반 국내 상황에 대한 젊은 나이의 객기와 고뇌로) 당시 영.미식 로펌 형태를 지향하며 태동기를 지난 김.장법률사무소에 합류, 평생 변호사로 실무 처리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 특정 분야에 깊이 있게 연찬을 계속할 여유라고는 없었던 '어장' 형편에 지난 31년여를 돌아보며 어떻게 문맥을 잡아야 할지 부터 난감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오랜 인연의 끈을 잡아 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담론을 즐기고 교수로 전직한 후에도 각별히 교분을 유지해 온 석광현 교수께 자문한 바, 학문 연구 외에는 일생 도움이 안되는 사람으로 주변에 늘 상찬(?)해 온 석 교수께서 뜻밖에 자상한 도움의 손길을 뻗쳐 학회 분위기와 전임회장분들의 동향 및 창립회장님은 학회 임원 분들과 대담 형식으로 학회 활동을 회고하시는 것으로 기고에 갈음하기로 하셨다는 정보와 함께, 국제거래법 연구 분야와 학회가 인접 분야 학회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자적, 학문적 견해를 주석까지 충실하게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학회에 보낸 자신의 회고담 원고를 흔쾌히 보내주어 살펴본 바, 기대되는 창립회장님의 대담 내용과 함께 선배 연구자의 학문적 열정과 학자적 소신을 후학들에게 보여주어 귀감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쳐 '어장'의 소임을 맡기 전후로 20수년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며 이제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까지 학회 주변을 서성대고 있는 입장에서 회장 재임 당시의 학회 활동과 회원들간의 교류를 개인적 소회를 담아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반면교사가 아닌 회고담(回顧談) 정도로 타산지석이 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적당한 자기 합리화에 이르게 되

었다. 따라서, 이하의 기술은 기억을 되살리고 가다듬기 위해 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강연회 자료와 '어장' 재임 기간 중 발간된 학회지의 회장 인사말을 살펴본 외에 다른 문건을 참조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기록을 보면 1990. 10. 10. 창립회장님을 비롯해 9분이 제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학회 명칭을 국제거래법학회로 정하고 연구활동 범위를 국제상거래법(사법)을 주로 하되 국제거래규제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한 한편, 10. 25. 제2차 발기인 모임에서 창립총회 일자와 학회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11. 17.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 발기문에 기명 표기된 필자를 포함한 총 21분의 발기인 중 (기억의 편의에 따른 전후 시점의 직책으로) 김은상 KOTRA 사장님, 신국환 의원님, 김용환 변호사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이 그 사이 유명을 달리 하셨음에 새삼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착잡한 심정으로 깨닫게 된다.

학회 창립 당시 개인적으로는 영감님이라는 시대 착오적 호칭과 매판자본의 앞잡이, 영어하는 사법서사 등의 폄훼와 질시가 엇갈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법조 사회 분위기 속에 나름대로 차관과 현지금융을 비롯한 국제금융 관련 섭외업무를 시작으로 국가 전략산업이었던 조선, 해상과 해외건설 업무 및 통상 문제와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등 업무로 밤낮없이 일하며 해외출장이 잦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 발기인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한편, 창립총회에 비로소 참가해 창립회장님의 "국제거래법 연구의 기본방향"에 대한 강연과 당시 경제기획원 심판행정관이셨던 이남기 박사님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학술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바, 그후 학회가 법조계, 학계, 관계, 산업계에서 각 한 분씩 부회장을 모시는 체제로 운용되는 중에도 형편 닿을 때 참석해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고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자족한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 심층 연구는 고사하고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외환 위기를 전후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회사정리와 화의절차 등 종전에 없던 업무와 통상마찰, 국제소송, 중재와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업무에 이르기 까지 수임범위와 책임이 확대돼 문제 해결과 실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리와 관련 산업의 관행,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자력 학습으로 출장편 비행기에서도 시간을 아껴 관련 자료 및 서류 검토는 물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제협정, 외국법제나 교과서 수준의 책자, 전문적 논문 등을 읽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형편에, 느닷없이 창립회장님이 당시 최공웅 특허법원장님께 회장직을 이양하시겠다고 말씀을 꺼내 학회 운영과 살림 형편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잠시, 다시 일상 사무실 업무에 파묻혀 지내느라 3대 이기수 회장께서 광주에서 경향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주관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무등산에 올랐던 기억과 4대 김문환 회장을 모시고 UNCITRAL과의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했던 기억을 한편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려던 차 뜻밖에 선배들이 차기를 맡아야 한다고 해 그후 어떻게 일을 수습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다만 한 가지, '어장' 후임을 서헌제 교수께서 맡기로 하는 내락을 받아 '어장'이 '늘장'이 되지 않도록 퇴로부터 보장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여하튼, 2003년

초 회장 직분을 맡아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시 법조인들 중 드물게 남다른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1999년 초 한양대 법대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전임교수로 전직한 후에도 각별히 교분을 유지하며 학회 임원진 구성과 학술 연구 주제에 대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석광현 교수의 협조와 총무이사로 수고해 준 신창섭 교수님 등, 세월이 흐를수록 '어장' 형편을 감안해 당시 정말 과분한 분들이 학회 운영에 헌신적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훌륭하신 임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장'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말하자면, '어장'으로서 한 일은 학회 재정 관리와 선, 후배 회원들 간의 교류, 친목 등 행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을 뿐, 학회의 연구 대상 분야의 교수, 연구자 섭외와 UNCITRAL 등 국내외 학술 단체간 교류, 연구 주제 및 방향 설정 등은 모두 석 교수님을 비롯해 분야별 이사 위촉을 수락,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 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어장' 형편에 과외로 학술적 연구에 신경 쓰거나 학회 주제 발표, 토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형편에도, '어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나름 애쓴 것은 주기적으로 시행해 온 학술발표회를 매월 거래의 실질법과 절차법, 통상에 관한 주제를 번갈아 가며 정례화한 한편,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와의 합동 연찬회와 법무부 및 UNCITRAL과 공동으로 'UNCITRAL 협약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치 않지만) 학회지 12집부터는 학회 학술모임에서 발표된 논문 외에 회원들의 기고를 받아 엄선한 논문을 같이 수록하게 한 것과, WTO 출범 10년째 해를 맞아 도하개발어젠더(DDA)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FTA 체결을 둘러싼 시각의 차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학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엔나협약(CISG)에 대한 국회 비준을 얻어 2004. 2. 17. 가입서 기탁, 3.1. 발효하게 된 것과 학술진흥재단 예비후보지 등재 요건상 경향 간의 학술교류 실적이 도움이 된다고 해 적지 않은 재정 출혈을 감당해 가며 2004. 11. 27. 부산에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나마 새롭다.

이제 '어장'의 회고담을 결국 객담 형태로 마무리하려다 보니 우리 학회 주변을 서성이며 정말 훌륭한 학자, 선.후배 연구자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무색할 정도로 급변하는 생활 환경, 기후변화와 ESG, mobility 전환과 우주 탐색, 암호자산과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에 이르기 까지 융.복합적 지혜와 경륜이 실무가에게도 절실한 터에, 이번 학회지가 발간될 즈음에는 이미 기정 사실로 누구나 방문해 가르침을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창립회장님의 화상회의 플랫폼이 11. 30. 저녁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으로 발족 모임을 갖는다고 해 '어장'인 형편에 감히 학회 명예회장님들 반열에 함께 서도 될지 저으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과 함께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횡설수설 회고담을 마친다.

나와 국제거래법학회

제7대 회장
손 경 한

학회 창립에 관한 단상

1987. 2.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의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미국 유학중 중앙대 법대에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던 서헌제교수가 워싱턴대학에 1년간 연구년을 와서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하고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미래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0년 언제쯤인가 서헌제교수와 만나 미국에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한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국제거래법학회를 만드는 것에 의기투합하였다. 바로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하시던 송상현교수님을 자택으로 찾아뵙고 회장을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당시 송교수님은 49세의 젊은 연세였으나 쾌락하여 주셔서 학회 창립에 착수할 수 있었다. 최공웅 법원장님, 신국환 당시 차관보님, 김용환변호사님 등을 부회장으로 모시고 1990. 11. 17.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제 3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된 학회의 출범을 선언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매월 1회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 매월 1회 팔래스 호텔에서 조찬모임으로 간사회의를 가졌다. 이어 1991년과 1993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유학시 지도를 받았던 Stanislaw Soltysinski 교수와 William Weiland 변호사를 초청하여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열정적으로 학회 일에 매진하였던 때였다.

학회 가버넌스의 정립

우리 학회의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국의 각종 단체의 집행부 구성방법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다. 먼저 부회장단의 구성은 학계, 재조 법조계, 재야 법조계, 관계(官界) 출신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새로이 부회장 1인을 회장이 된 분의 분야에서 모시는 체제이다. 따라서 수석부회장은 자연스레 부회장 중 제일 오랫동안 봉사한 분이 되게 마련이었다. 또한 상임이사(창립 초기에는 간사라고 불렀다)진을 중견으로 구성하여 총무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중에서 부회장직을 맡는 전통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후일에 이르러 학계는 국제거래 사법분야 뿐아니라 국제거래공법 분야도 배려하여 후자 출신의 학자를 부회장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부회장이 10인이 넘고 대부분의 회원이 이사가 되는 이른바 "전 회원의 간부화" 정책을 취하는 다른 학회와는 차별화되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학계의 이러한 조류를 거역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회장을 그만둔 뒤에 "전 회원 간부화"를 막기 위

하여 간부들이 부담할 회비를 대납한 적도 있으나 오래지 않아 우리 학회도 대세를 따라가고 만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 사회에도 어떤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방침과 시책을 거의 모조리 폐기하여 버리는 악습이 생기고 말았는데 학회만큼은 안정적인 가버넌스를 확립하여 그 순수성을 지켜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기를 기대해 본다.

UNCITRAL과의 공동학술대회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학회가 UNCITRAL과 공동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한 것은 2003년이다. 그때로부터 격년으로 공동학술대회를 다년간 개최하여 왔던 것은 특기할 일이다. 최초의 공동학술대회는 2003. 9. 25.과 26. 양일이 걸쳐 무역센터에서 UNCITRAL 협약 전반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UNCITRAL의 Spiros Bazinas 박사를 만났다. 당시 국제매매협약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던 SMU의 Peter Winship 교수도 참석하였다. 그 이후 Bazinas박사는 공동학술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이어 2005. 10. 28.에는 무역센터에서 국제매매협약 2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Bazinas 박사를 비롯하여 Kate Lannan 박사 등이 발표하였다. 2007. 11. 23.에는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비부동산담보법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Bazinas 박사 외에 이재성 법무관, Michel Deschamps 및 McCarthy Tetrault 캐나다 변호사, 오키노 마사미(沖野眞己) 히토츠바시대 교수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2009. 11. 10.에는 UNCIT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주제로 Jane Winn 워싱턴대학 교수, Luca Castellani 전자상거래 담당, 이재성 박사, Viet Anh Lai 베트남 상공부 법무실장 등이 발표를 하였다. 당시 맺은 Bazinas 박사와의 인연으로 그의 초청을 받아 비엔나에서 열린 UNCITRAL 실무회의에 두 차례나 참석하고 Bazinas 박사의 자택으로 초대받아 만찬을 같이 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 기회에 Bazinas 박사의 후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2. 1. UNCITRAL 아시아태평양사무소가 인천 송도에 개설되었음에도 UNCITRAL과의 공동학술대회가 중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국 정부가 UNCITRAL 아시아태평양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가 재개되기를 기원한다.

국제거래법과목 시험범위의 조정

2006년 사법시험 선택과목이었던 국제거래법의 시험범위를 축소하여 응시 인원을 대폭 늘인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는 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건국대학교 국제거래법 전임교수로 부임해 보니 국제거래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소할 뿐 아니라 사법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응시생이 수험생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히 국제거래법학이 사멸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06. 4. 13. 당시 서헌제 학회 회장과 법무부에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과목 출제 범위를 국제사법과 국제매매협약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석광현교수와 함께 법무부로 당시

국제법무과장이었던 김준규검사(후일 검찰총장을 역임함)를 찾아가 구두로 건의를 전달하였다. 김준규과장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2006. 7. 21. 법무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6. 10. 26. 그에 따라 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호사시험으로 변경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거래법학으로서는 그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순간이었다. 다만 국제거래법 과목 선택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다른 선택과목에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산하 연구회의 결성

2007. 2. 26. 회장 취임 후 첫번째 벌인 사업은 국제거래법학의 광범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산하 연구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수석부회장 시절이었던 2006년 국제에너지법 연구회를 결성하여 내가 직접 연구회장을 맡았었는데, 2009. 6. 17.에 이르기까지 제14차 연구회까지 개최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 국제금융법연구회를 결성하여 2007. 3 .2. 제1차 연구회 개최한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는 등 2015년 경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회장 재임시 창설한 또하나의 산하 연구회는 국제투자분쟁연구회이다. 당시 국제투자중재사건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서울대 신희택교수에게 연구회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ISD연구회가 결성되었다. 2007. 10. 10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한 이래 2008. 5. 28.까지 4차에 걸쳐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경에는 국제건설법연구회와 국제매매법연구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제건설법연구회는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로 확대되어 10년 이상에 걸쳐 이론과 실무를 가교하는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경하할 일이다. 다른 국제거래법 분야에서도 전문영역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학회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일본 및 중국학계와의 교류

2007년경에는 이웃한 일본과 중국과의 국제거래법학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도 시작할 시기가 무르익었었다. 일본과의 학문적 교류는 일본 국제사법학회 회원 학자들과의 공동연구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국제거래법학회 차원에서의 교류는 희소하였다. 동경대학의 이시구로 가즈오(石黑一憲)교수의 발표를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2007년 학회 회장 취임시 국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일본 요코하마대학의 유혁수교수를 국제이사로 위촉하여 꾸준히 일본과 접촉하여 왔으며 2007. 10. 20. 교토의 同志社대학에서 열린 일본 학회 제17회 학술대회에 우리 학회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2008년 동경에서 열린 동 학회의 국제매매협약 발효 20주년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제경제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본인의 임기중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후임 집행부에서 유혁수 교수가 노력하여 2012. 9. 1.에 이르러 공동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일본 학회 회장 고테라 아키라(小

寺彰) 동경대 교수 등이 참석함으로써 마침내 그 결실을 보았다. 그 이후에도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는 한국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2007년 이래 한일 양 학회간의 교류에 힘써 준 유혁수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한중교역의 획기적인 증가와 함께 중국과의 학술 교류도 추진하였다. 2007. 10. 30. 무역회관에서 "한중간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황진(黃進, Huang Jin) 당시 우한대학 법학원 교수(현 중국정법대학 총장), 진웨이조(陳衛佐 Chen, Weizou) 청화대 법학원 교수, 장시아오지안(張瀟劍, Zang, Xiao Jian) 북경대학 법률학계 교수, 두신리(杜新麗, Du, Xin Li) 정법대학 국제법학원 교수, 왕홍펭(王洪鵬, Wang, Hongpeng) 청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발표를 하였다. 대회장을 구하지 못하여 삼성동 이비스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던 기억이 새롭다. 이듬해인 2008. 10. 31.에는 COEX 인터콘테넨탈호텔에서 "한중에너지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국 叶栄泗 중국법학회 에너지법연구회 회장, 肖國興 화동이공대학 법학원장, 莫世建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장 등이 발표를 하였다. 중국과의 교류에는 학회 부회장인 최승환 경희대 교수의 기여가 컸음을 밝힌다. 2011년 이후에는 한국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중국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큼 향후에도 양국간 또는 3국간 학회를 통한 긴밀한 학술적 정보 교환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심당학술상 제정과 시상

이제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시상해 온지도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2007년 학회장에 취임하자 말자 학술상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학회가 창립된 지도 15년이 넘어 학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국제거래법학에 대한 연구열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금을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5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학술상의 명칭은 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교수님의 호 심당(心堂)에서 따왔다. 그러나 그 대상은 법학논문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제거래에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논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심사위원도 법학자에 한하지 않고 무역상무학을 하시는 분을 모셨다. 2007. 4.에 학술상규정을 제정하고 2007년에 발표된 논문을 모아 2008. 1. 심사를 시작하였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실린 이화여대의 최원목 교수의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이 선정되어 2008. 3. 정기총회에서 시상되었다. 2009. 3. 6.에 이루어진 제2회 심당학술상 수상자는 나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대 박준교수의"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라는 탁월한 논문이 선정되어 2009. 3. 시상식이 있었다. 지금도 미안한 것은 상금 500만원 전액을 학회에 기부할 것을 내가 강권한 일이다. 그동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법학논문만 그 대상이 되고 무역상무학에 관한 논문에 대해 시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마침내 2021. 3. 덕성여자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강의하는 김상만 교수의 저

서"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 "가 수상하여 밀린 숙제를 마친 느낌이었다. 동 학술상이 국제거래법학 발전에 지속적인 촉진제가 되길 기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해였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사태였다. 우리 학회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먼저 산하연구회인 국제금융법연구회에서 2008. 3. 19. 한국기업평가(주)의 김경무 신용파생실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CDO 위험평가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는 더욱 심각해져 실물경제에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G20 정상들은 2008. 11. 15. 워싱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가 보기에 사태수습과 원인 해소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우리 학회는 2008. 11. 28.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금융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증권업협회 빌딩에서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정순섭 교수가 "유동화, 파생상품 등 구조화거래의 성행과 금융감독"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학술대회의 말미에는 (i) 국제금융규범의 정립, (ii) 세계금융기구(World Finance Organization, WFO)의 창설, (iii)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y Fund, AMF)의 창설, (iv)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도입, (v) 각국의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v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보완, (vii) 금융종사자의 규범의식 제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당시 G20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인 국내금융제도를 갖추고 나아가 국제금융제도의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을 주창하였다. 이어 2008년 말에 발간된 학회지 국제거래법연구는 "금융위기 대책"을 주제로 하는 특집으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WFO나 아시아통화기금은 설치되지 못하였고 미봉적인 대응으로 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수많은 국가가 피해를 입은 채 끝났다. 새로운 국제통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창안되었으나 이 또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견제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학회가 나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나와 한국증권금융 입사동기로서 학술대회를 지원하여 준 당시 한국증권업협회의 황건호 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오늘날 우리 학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창립 초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던 우리 학회의 간부와 회원들이 있었고 그에 이은 소장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은 바 크므로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제거래법학회 30년 회고

제8대 회장
최 준 선

우리 학회의 기틀을 놓으신 학회 초대 회장님은 존경하는 송상현 교수님(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십니다. 송 회장님에 대해서는 다른 역대 회장님들께서 충분히 언급하실 것입니다만, 회장님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제7대 회장이신 손경한 회장께서 심당학술상을 제정하셨고, 당시 저는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손경한 회장님에 이어 저는 제8대 회장(2009년~2010년 2년 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심당학술상 상금은 송상현 교수님의 출연이 큰 몫을 차지했고, 5대 회장이신 조대연 회장님께서 항상 거액을 기부하셔서 끊임이 없이 시상될 수 있었습니다.

제2대 회장은 1998년 당시 대전특허법원장이셨던 최공웅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그때 총무이사로서 봉직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법원장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매월 열리는 월례회까지 주관하시는 등 학회를 위해 열정을 바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품이 지극히 훌륭하신 최 회장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생일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란 "인격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만, 최 회장님께서는 그때 이미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이셨습니다. 이어서 3대 이기수 회장님, 4대 김문환 회장님, 5대 조대연 회장님, 6대 서헌제 회장님, 7대 손경한 회장님께서 학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8대 회장인 저의 후임으로는 서울 가정법원장을 역임하신 이호원 회장님이 제9대 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장님 명단을 열거해 본 것은, 학회가 3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책자에 기라성 같았던 역대 회장님들의 성명이 단 한 줄 언급도 없다면 과연 근본이 있는 학회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회장은 한때 학회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연회비 100만원씩 납부했던 분으로, 이젠 쓸모를 다하였다고 하여 마치 서늘한 바람 부는 초가을 부채처럼 상자 속에 처박혀 잊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고록에 기록은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은 본래 자기 자랑을 빼면 쓸 얘기가 없기 마련입니다. 염치는 없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를 열거해 보자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는 평생회비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 학회 재정이 열악했고, 회원들의 연회비가 3만원이었기 때문에 회비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참여의식을 고취한다는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평생회비제도는 10년치 3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평생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상사법학계의 모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등 대부분의 학회가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호응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지금도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제가 학회장이던 2009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님이 임명되셨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시기 직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시던 때, 우리 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입니다. 당시 로스쿨이 막 출범한 때로서, 국제거래법이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기로 된 것, 그리고 그 시험 내용은 '국제사법'과 '1980년 UN국제물품매매협약'으로 한다는 것으로 그 시험범위를 확정되는데 김 총장님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준규 총장님은 2011년 7월 4일 청와대의 중재로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단호히 사직서를 제출해 했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김총장님의 결기가 후배 검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총장님은 단기 필마로 검찰을 지키신 분입니다. 김총장님은 지금은 '흙작가'가 되어 흙으로 만드는 예술가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무부가 위촉한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문제유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재의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문제유형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때 결정된 문제 유형에 따라 금년 2021년까지 제10회 국제거래법 문제는 국제사법 80점, 국제물품매매법 80점으로 고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몇몇 위원께서 국제사법문제 중에 국제물품매매를 포함하는 혼합 단일 문제로 출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저는 국제사법문제에 반드시 국제매매문제가 삽입되어야 한다면 국제사법 문제가 지나친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양 과목을 분리하여 출제한다는 방침을 관철했으며, 그러한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옳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9년에는 학술대회도 풍성하게 개최되어 5월 29일에는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거래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6일 대법원과 합동세미나, 9월 18일 국제거래법학회 및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공동주최 추계학술대회, 10월 23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국제거래법학회·한국항공법학회·한국해법학회 공동 "물류법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합동 학술발표대회, 11월 6일 국제거래법학회·UNCITRAL·성균관대학교 BK21 사업단·법무부 국제법무과 공동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에서는 서거석 총장님과 송양호 교수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 전주비빔밥과 전주한정식을 즐겼습니다. 귀가하는 길에는 마음을 담은 선물까지 마련해 주셔서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09년 학술지 제18집 제1호는 학술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그 소속 김갑유 변호사님(학회 감사)와 강용현 변

호사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학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과 그 소속 변호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지금 돌이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춘계학술대회는 3월 12일 국립의료원 내 스칸디나아클럽에서, 6월 24일에는 대법원과 공동세미나, 10월 1일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제학술대회(아시아에 있어서의 상거래법의 통일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제 임기 동안에는 2년 연속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도 대체로 성황을 이루어 100명 이상이 현장에 출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 말까지 '국제매매법연구회'(연구회장 석광현 교수님)가 누적 19차 연구회를, '국제에너지법연구회'(연구회장 최승환 교수님)가 누적 24차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던 기간 총무이사는 서완석 가천대 법대 학장님, 연구이사는 연세대 심영교수님과 중앙대 박원석 교수님이셨습니다. 출판이사는 동국대 최창렬 교수님과 단국대 손승우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출판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이사로 가천대 최경진 교수님, 섭외이사로 영산대 김병태 교수님, 재무이사로 전북대 송양호 교수님, 기획운영이사로 연세대 박덕영 교수님, 경찰대 장문철 교수님, 외국어대 가정준 교수님, 숭실대 허해관 교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셨기로 이곳에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다른 시절의 활동은 당시 회장님께서 회고해 주실 것이므로 언급을 삼갔더니, 회고담에 죄송하게도 저의 역할만 잔뜩 쓴 것 같습니다만, 학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며 수많은 회원님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당시 저와 함께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거래법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거래법학회 창립 30주년의 회고(回顧)
국제거래법학에 관한 단상(斷想)

제10대 회장
석 광 현*

Ⅰ.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13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까지 전임 이호원 회장님의 뒤를 이어 국제거래법학회의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1990년 창립된 국제거래법학회가 2020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1년 11월에 이르러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1] 필자도 참석하였기에 감회가 없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학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필자의 흉중에 떠오르는 개인적 단상을 두서없이 적어보고자 한다. 이는 通史的인 기술은 아니며 몇 가지 단편적인 회고담과 아쉬움에 그친다.

필자는 국제거래법에 관하여 다른 기회에 "한국국제거래법학의 과제",[2]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3]와 "서울법대 국제사법·국제거래법 연구 70년"[4]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5] 해서 여기의 단상이 기존의 글과 일부 중복되거나 個人史를 담은 것이더라도 모두 국제거래법학과 이런 저런 형태로 관련된 것이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국제거래법학의 개념과 범위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데[6] 여기에서는 국제거래법을 국제상거래법(이는 '국제상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과 국제경제법(또는 국제통상법.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논의하되 전자를 중심으로 한다.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국제거래법학회는 2000. 6. 24.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았다. 필자는 전에 발표한 글에서 "비법인이던 국제거래법학회는 2000. 6. 24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썼으나(석광현,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과제", 成均館法学 제28권 제3호(2016. 9.), 62면) 정확히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엄밀하게는 31주년이 옳겠지만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였기에 여기에서는 30주년이라고 한다.

2) 이는 註 1의 글이다. 손경한, "한국 국제거래법의 변화와 발전",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2018), 1145면 이하도 참조.

3) 이는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2018. 11.), 1039면 이하에 간행한 것이다.

4) 별책 서울대학교 法学 제58권 제1호(2017. 3.), 391면 이하. 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1946-2017 (2018), 520면 이하에도 수록되었다.

5) 국제사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학회의 창립 20주년 회고와 전망: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과 판례",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2014. 6.), 3면 이하;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 현상과 전망", 동아대학교 국제거래와 법 제19호(2017. 8.), 69면 이하;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2018), 1177면 이하; "이호정 선생님의 국제사법학", 자유주의자 李好珽의 삶과 학문, 이호정교수 추모문집(2019. 12.), 37면 이하 등을 썼다.

6) 석광현(註 1), 54면 참조.

Ⅱ. 국제거래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과 관련된 회고

1. 국제거래법학회에의 참가

필자는 학회의 창립 당시부터 관여한 멤버는 아니었다. 필자가 처음으로 국제거래법학회에 참석한 것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필자는 1996. 6. 10. 국제거래법학회의 월례학술발표회에서 "國內企業의 海外社債 發行의 實務와 法的인 問題點— 유로債(Eurobond) 발행시 우리 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問題를 中心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를 다소 수정·보완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6집(1997), 29-64면에 수록하였다. 필자는 당시 김·장에서 국제금융거래를 주로 다루었기에 위 논문을 발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참석은 아닐 테고 아마도 국제금융 기타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주제 아니면 당시 한국의 가입 전이던 매매협약을 다루는 학회 모임에 참석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1998. 11. 21.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국제거래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토론은 상업은행 국제부 남기명 과장), "派生金融商品去来에 있어서의 一括清算의 문제점과 倒産法의 개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1999), 37-60면에 간행되었다.[7] 국제금융거래를 다루었기에 필자는 당연히 약관규제법, 담보법, 도산법과 국제도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한양대 법대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의 전직과 서울대 법대로의 이직

필자는 1999년 3월 변호사 생활을 접고 한양대 법대의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 부임하였다. 당시 '국제거래법·국제사법'을 묶어 전임교수를 두는 법과대학은 없었던 것 같다. 필자는 '국제(상)거래법+국제사법'이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촉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광의의 국제사법은 국제거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국제사법을 연구하자면 친족상속법을 공부해야 한다). 대안은 '국제사법·국제민사절차법'을 묶고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묶는 방안인데 후자에서 상법은 상거래법, 즉 상법총칙·상행위법, 보험계약법, 해상법과 어음·수표법을 말하고 회사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2009년 로스쿨

---

7) 또한 필자는 국제거래법연구에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담보거래—케이프타운협약과 항공기의정서를 중심으로—", 제12집(200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統合倒産法)에 따른 國際倒産法", 제15집 제2호(2006), "國際商事仲裁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제16집 제1호(2007),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제20집 제1호(2011), "한국의 國際裁判管轄規則의 입법에 관하여", 제21집 제2호(2012),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囲)와 흠결의 보충", 제27집 제1호(2018)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제28집 제2호(2019)를 발표하였다. 논문은 아니나 이 글이 필자가 교수로서 국제거래법연구에 간행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도입을 전후하여 변호사들이 교수로 전직한 사례는 많지만 필자처럼 90년대에 대형로펌에서 법대로 전직한 변호사는 별로 없었다. 당시 필자는 박사학위가 없던 탓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는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다.[8] 시급이 낮은 교수로서 국제회의에 가는 길에 비지니스석에 탑승한 후배 변호사들을 조우할 때에는 시쳇말로 '현타'에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근자에는 그런 기회도 없지만.

필자는 로스쿨의 출범을 앞둔 2007년 10월 한양대 법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이직하였다. 2002년 이호정 선생님의 정년퇴임 직후 '국제사법+민법' 공고가 나서 서울대 법대에 지원하였으나 공고를 낸 복수 과목 중 어느 과목에서 타교 출신을 선발할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채용이 무산되었고 그 다음 학기에는 필자의 과목이 타교 출신을 위한 과목으로 지정되어 지원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서울대로 이직하는 꿈을 접었기에 2007년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이직해야 하는지를 두고 한동안 고민하였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지인들도 있었으나 결국 이직하기로 하였다. 국제거래법학과 국제사법학의 토양이 척박한 한국에서 이 분야를 책임질 후학의 양성이라는 과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판사와 변호사로부터 학교로 전직한 교수들이 많아졌다. 판사와 변호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연구와 논문 발표를 하던 선량한 법조인들이 학교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임교수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잘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自警을 위하여 하는 말이다. '人從戒警 木從繩直'이라고 배웠기에. 실무가들의 대거 전직으로 인하여 학계에서 준비해온 사람들이 로스쿨 교수가 되기 어려워진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연구회의 설치와 운영

필자가 회장직을 맡기 전에도 국제거래법학회에는 매매법연구회 외에 국제에너지법연구회와 ISD연구회 등의 산하연구회가 있었으나 활동이 점차 위축되었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산하연구회만 언급한다.

(1) CISG에의 가입과 매매법연구회

매매법연구회는 2009년 3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당시 회장이던 손경한 교수님과 상의하여 연구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필자가 연구회장을 맡아 정기연구회를 개최하여 매매협약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기 우리나라에서 매매협약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였다.[9] 필

---

8) 필자의 전직을 이해해준 가족과 한양대 재직 중 필자를 고문(of counsel)으로 받아준 김·장에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9) 당시 매매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해준 허해관 교수께 거듭 감사드린다. 매매법연구회에 가끔 출석하셔서 정년퇴임을 하신 뒤에도 학문적 열정을 보여준 정진세 교수께도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 정 교수께서는 논문 투고료를 연구회 기금으로 기부한 적도 있다. 그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자가 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회장직을 이진기 교수가 승계하였고 그 후 가정준 교수가 승계한 뒤 2015년 말까지 활동 후 주춤하였다가 2016. 7. 28. 제62회 정기연구회를 개최한 것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근자에 총무인 이종혁 교수의 노력으로 연구회를 활성화시켜 제63회 정기연구회를 2021. 2. 24. 개최한 이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은 다행이다.

필자는 우리 민법 교수들이 예외없이 매매협약을 다루어야 한다고 믿지만, 우리 민법 교수들의 대부분은 매매협약에 대하여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매매계약법은 다루지만 국제동산매매계약법과 매매협약을 다루지 않는 민법 교수를 계약법 교수라고 부르기는 어렵다.[10] 한국에서 매매협약이 발효된 이상 이제 한국 매매계약법에는 민상법만이 아니라 매매협약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법인 후자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률가들도 영미계약법적 사고를 접할 수 있다. 북한도 매매협약에 가입하여 2020. 4. 1. 북한에서도 매매협약이 발효하였으므로 이제 남북한 기업간 동산매매계약에 매매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더라면 우리가 북한의 교수들과 함께 매매협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2) 국제건설 · 에너지법연구회

현재로서는 산하연구회 중 2013년 9월 국제건설법연구회(회장 정홍식 교수)로 발족한 국제건설 · 에너지법연구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스쿨 국제거래법'을 준비할 당시 국제건설계약 부분을 맡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 건설사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률가들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였다.[11] 당시 회장이던 필자는 2013년 5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주요 법률적 실무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학회 산하에 "국제건설법연구회"를 신설하였으며 건설에 큰 관심을 가졌던 정홍식 교수가 연구회장을 맡게 되었다.[12]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해외자원개

---

10) 예컨대 우리는 민법에서 인도의 개념을 배운다. 그러나 국제동산매매에서 인코텀즈에 따른 동산의 인도가 어떤 의미인지와 또한 국제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양륙항에 도착한 뒤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는지 등의 논점은 인도의 개념에 익숙한 민법 학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나, 신토불이 민법에 갇혀 있는 민법 교수들은 그런 쟁점에 접할 기회가 없다.

11) 이는 국제선박건조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우리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영역에서조차 우리 법률가들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물론 한국법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일이므로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12) 또한 김승현 미국변호사의 도움도 주효하였다. 김승현 변호사는 2014년 8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를 보완하여 2015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개정판을 내었다(필자는 위 단행본에 추천사를 썼다). 또한 정홍식 교수와 다른 발표자들은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총서로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1권(2016)과 제2권(2019년)을 간행하였으며 필자는 감수자로 이름을 올

발(석유/가스) 거래의 법률적 및 계약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이는 활동이 점차 약화되던 국제에너지법연구회 회장인 함철훈 교수님[13]의 양해 하에 국제에너지법연구회와 2015년 3월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로 확대·개편되어 정홍식 교수의 주도 하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필자의 후임 회장에 관한 아쉬움

필자는 2013년 3월 회장에 취임하면서 최승환 교수님을 수석부회장으로 모셨다. 최 교수님은 이미 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최 교수님이 양 학회의 재통합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 또한 필자의 임기 동안 국제상거래법을 주로 다루고 최 교수님이 회장에 취임하면 그 때에는 국제경제법을 더 다루면 좋겠다는 희망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임기가 끝날 무렵 최 교수님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차기 회장직을 맡을 수 없음을 알려왔다. 해서 필자는 부랴부랴 당시 회장단 모임을 열어 차기 회장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김갑유 변호사님이 필자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김 변호사님께는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5. 국제거래법 논문의 상대적 부족과 국제적 활동의 미흡

필자는 광의의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국제거래법에 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못하였다. 이는 국제거래법에 관한 논문은 "Law and Practice of (특정 국제거래법 분야)"의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탓에 우선 당해 분야의 실무를 정확히 기술한 뒤 법적 분석을 함으로써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 내지 상승효과"를 기대하는데,[14] 변호사인 로스쿨 교수의 실무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제 탓에 필자가 실무와 유리되어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15] 또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근자에는 여러 학회들이 논문의 투고를 권유하면서도 정작 투고를 하면 논문 교정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게재료를 받는 점이다. 필자가 국제거래법 학회 회장일 당시에는 어느 교수님의 정년기념호의 간행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논문 투고를 권유한 때에는 그에 응한 투고자들에게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필자는 UNCITRAL이나 UNIDROIT 등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련 분야의 국제적

리는 영광을 경험하였으며 그 덕에 수록된 모든 논문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

13) 함 교수님은 원자력법제론(법영사. 2009)과 원자력손해배상법-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배상실무-(진원사. 2013) 등의 저자이다.

14) 독일에서 LL.M.을 마친 뒤 1991년 상반기에 영국 로펌에서 연수를 한 필자는 국제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영국법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우선 한국 기업들이 당사자가 된 영국 판례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할 생각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독립적 보증이 문제된 Rainy Sky SA and others v Kookmin Bank [2011] UKSC 50도 그 중의 하나이다.

15) 이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다른 기회에도 언급하였지만 법학에서는 일부 기초법학 분야를 제외한 다면 실무와 유리된 연구는 공허하고 연구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동향을 파악하고 살아 있는 비교법과 외국법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과 해당 분야의 고수들을 알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16] 이는 필자가 변호사를 계속하였더라면 하지 못하였을 귀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필자의 학계로의 전직이 비교적 늦은 탓도 있지만 필자의 성격과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Ⅲ. 국제거래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과 관련된 아쉬움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적어 본다.

1. 2003년 국제경제법학회의 분가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거래법학회는 창립 시부터 국제상거래법만이 아니라 국제경제법을 함께 다루었다. 학회 회칙(제2조)도 "재화, 자본, 사람, 서비스등의 국제적 이동 즉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이하 국제거래법이라 칭한다)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라고 목적을 명기한다. 그러나 국제경제법 학자들은 2003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17] 그 결과 국제경제법에 관한 한 국제거래법학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국제거래법학회가 공식적으로 국제경제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제거래법학회가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의 수상작을 대체로 국제상거래법 분야와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번갈아 선정하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국제상거래법 분과와 국제경제법 분과를 두는 원래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송상현 교수님은 총무이사인 조인영 교수가 대독한 "국제거래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축사에서 "국제거래법은 법학의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학의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학문 분야임은 물론 경제학을 비롯한 인접 사회과학분야까지도 포섭하는 학제적이고 통섭적 분야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위 3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국제통상법·국제투자법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담당한 박덕영 교수도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의 통섭적인 이해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국제거래법학회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도 그에 공감한다. 필자가 원하는 모습은 평소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16) 필자의 기억으로는 재판협약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처음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갔었고, UNCITRAL 회의(국제채권양도협약을 위한) 참가를 위하여 비인에는 2001년 6월 처음 갔었다. 로마에서 개최된 UNIDROIT 간접보유증권회의에는 2005년 5월 한 차례 참석하였다(이에 관한 글을 쓰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일부 회의에는 자비로 참석한 적도 있다.

17) 필자는 당시 회장이던 조대연 변호사님께 어떻게든 분가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사실 막을 길은 없었다.

동향을 파악하고 살아 있는 비교법과 외국법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과 해당 분야의 고수들을 알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16] 이는 필자가 변호사를 계속하였더라면 하지 못하였을 귀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필자의 학계로의 전직이 비교적 늦은 탓도 있지만 필자의 성격과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Ⅲ. 국제거래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과 관련된 아쉬움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적어 본다.

1. 2003년 국제경제법학회의 분가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거래법학회는 창립 시부터 국제상거래법만이 아니라 국제경제법을 함께 다루었다. 학회 회칙(제2조)도 "재화, 자본, 사람, 서비스등의 국제적 이동 즉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이하 국제거래법이라 칭한다)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라고 목적을 명기한다. 그러나 국제경제법 학자들은 2003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17] 그 결과 국제경제법에 관한 한 국제거래법학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국제거래법학회가 공식적으로 국제경제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제거래법학회가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의 수상작을 대체로 국제상거래법 분야와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번갈아 선정하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국제상거래법 분과와 국제경제법 분과를 두는 원래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송상현 교수님은 총무이사인 조인영 교수가 대독한 "국제거래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축사에서 "국제거래법은 법학의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학의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학문 분야임은 물론 경제학을 비롯한 인접 사회과학분야까지도 포섭하는 학제적이고 통섭적 분야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위 3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국제통상법·국제투자법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담당한 박덕영 교수도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의 통섭적인 이해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국제거래법학회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도 그에 공감한다. 필자가 원하는 모습은 평소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

16) 필자의 기억으로는 재판협약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처음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갔었고, UNCITRAL 회의(국제채권양도협약을 위한) 참가를 위하여 비인에는 2001년 6월 처음 갔었다. 로마에서 개최된 UNIDROIT 간접보유증권회의에는 2005년 5월 한 차례 참석하였다(이에 관한 글을 쓰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일부 회의에는 자비로 참석한 적도 있다.

17) 필자는 당시 회장이던 조대연 변호사님께 어떻게든 분가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사실 막을 길은 없었다.

연구회들이 각각 활동하는 한편 1년에 적어도 1회쯤 종합적인 학술대회(통합 발표와 분과별 발표로 구성)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법 교수들이 국제거래법학회를 떠난 과거의 경위를 상고하면 이제는 교류와 협력은 가능하지만 양자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교수로서는 처음으로(또는 서헌제 교수님을 포함한다면 오래 간만에) 국제경제법 전공자인 장승화 교수가 회장이 되었으니 변화를 모색할 좋은 기회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학회가 난립하고 있는 우리 법학계의 현실을 직시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상법 및 상사법학회와의 관계

국제사법학회의 창립 무렵에는 국제거래법은 국제상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고 국제상거래법만을 국제거래법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다. 어쨌든 그 무렵 국제상거래법을 상법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는 별 의문이 없었다. 예컨대 필자는 2002. 7. 4. 부산에서 개최된 상사법학회에서 매매협약 가입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상사법연구에 간행하였다.[18] 2002년만 해도 이처럼 상법과 상사법학회에서 국제동산매매계약[19]과 매매협약을 다루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국제상거래법은 상법의 전도유망한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학회 초대회장이신 송상현 교수와 그 뒤를 이은 이기수 교수, 김문환 교수와 서헌제 교수 등은 모두 당초 상법 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법학회는 국제거래법을 국제경제법을 포함하는 광의로 이해하였기에 상사법학회와 별도의 국제거래법학회를 창립할 이유가 명백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과 변시 과목의 조정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테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국제거래법은 국제상거래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경제법학회가 국제거래법학회로부터 독립하여 창립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결과인지 상법 교수들은 점차 국제거래법과 거리를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른 기회에 "국제거래법은 상법으로부터 분화된 것이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제거래법에 무관심한 상법 교수들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아래 국제거래법은 국제상거래법을 말한다).[20]

---

18)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가입과 한국법에의 수용", 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2. 8.), 41면 이하.

19) 예컨대 정희철, "Incoterms의 법률적 의의와 타당근거", 서울대학교 법학 제13권 제2호(통권 제28호)(1972), 23면 이하 참조.

20) 석광현, "서울법대 국제사법・국제거래법 연구 70년", 별책 서울대학교 法学 제58권 제1호(2017. 3.), 409면, 註 87 참조. 이는 그 후 단행본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1946- 2017 (2018), 520면 이하에도 수록되었다.

"상법 교과서는 상법과 민법의 관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상법과 국제거래법의 관계를 논의해야 하고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즉 상법은 국제성이 제거되고 국내상법으로 퇴행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상법과 독립된 과목으로서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시험을 치르는 한국의 현실에 뿌리 내린 한국 상법학자가 취할 자세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상법학자들은 우리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김성태, 商法總則·商行爲法講論(1998), 40면은 이 점에서 모범적이다. 상세는 동, "국제화와 법률가의 역할", 법과 사회, 제10호(1994), 71면 이하 참조. 의외인 것은, 국제거래법 교과서를 집필한 상법학자들도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다룬 저서에서는 상법과 국제거래법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는 점이다. 예컨대 이기수 교수와 최준선 교수의 교과서 참조."

상법 교수들이 대체로 국제경제법에 무관심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일 국제상거래법에 관심이 없다면 이는 제대로 된 상거래법 교수가 아니다. 예컨대 상행위법을 가르치는 상법 교수가 금융리스, 가맹업과 채권매입업은 가르치지만 국제금융리스, 국제프랜차이즈와 국제팩토링에는 무관심하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환어음을 가르치는 상법 교수가 국내환어음만 가르치고 국제환어음거래에 무관심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해상법 교수가 국내해상법만 가르치고 국제해상법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cross-border transactions(越境去來, 초국경(적) 거래 또는 跨境去來)를 다루자면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해서 국제상거래법과 국제사법은 함께 가야 한다.

3. 로스쿨에서의 국제거래법 강좌와 전임교수의 충원

로스쿨을 보면 '국제거래법+국제사법'의 조합을 취하는 곳과 '상법+국제거래법'의 조합을 취하면서 다른 교수가 국제사법을 담당하도록 하는 곳이 있다. 실제로 변시에서 국제거래법+국제사법이 가장 선호되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적합성을 구비한 교수가 없는 로스쿨들도 있다. 문제는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전임 교수가 있고 강좌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은 하지 않은 채 변시에서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런 경우 로스쿨 차원에서 선택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한다면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국제법무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로스쿨은 실패하였는데[21] 이는 도입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임교수의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법+국제민사절차법'의 조합과 '국제거래법+해상법'의 조합도 고려할 만하다. 어쨌든 국제거래법학이 흥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자면

21) 박지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법무교육에 관한 소고－사법분야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59호(2013), 421면에 따르면, "실제로 인가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중 9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법무와 관련된 특성화전략을 밝히고 있다."고 하였으나(註 24도 참조) 실제로는 많은 강좌들이 폐강되고 있으며(위 423면), 심지어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전담교수도 없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도 전임교수 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생존하기 위한 로스쿨들은 전임교수 자리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아쉬운 것은, 능력 있는 실무가가 논문 등의 발표를 통하여 학계에 기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4.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학회 활동에 대한 무관심

실제로 국제상거래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적지 않다.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바로 국제상거래를 다루는 데 필요한 영어와 영미법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기가 다루는 분야의 국제상거래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국제상거래 분야, 더욱이 국제거래법학이라는 것에는 무관심하며 사실 국제사법 이외의 국제거래법학이라는 것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무관심하다. 이는 국제상거래법과 국제상거래법학의 속성상 부득이한 면이 있다. 예컨대 국제금융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지재권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상대의 영역에 무관심하고, 양자 모두 국제해상거래에는 별 관심이 없다.[22] 그러나 국제거래법학의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 성향에 비추어 로펌이나 사내변호사로서 특정분야의 국제상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거래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국제거래법학계가 이들과 긴밀하게 교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한국, 우리 산업계와 우리 법률가들이 국제거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 그들의 산업계와 법률가들과 거래를 하고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23] 전문분야로 육성하며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예컨대 대한변협회지인 '인권과정의'와 같은 잡지가 전문분야별로 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의 운영에서 실제로 목도하는 바이다.[24]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거래의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은 설 자리가 없다. 즉 실무는 있으나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은 없게 될 것이다.

5. 국제거래법학의 근원적 한계

우리나라에는 국내법 분야의 학회가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융법 관련 학회만 해도 증권법학회, 금융법학회, 보험법학회와 은행법학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상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해법학회와 비교사법학회는 별도로 있는데 그와 별개로 한국상사판례

---

22) 이 점은 국제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3) 현재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국제거래법 커뮤니티가 있기는 하다.

24) 국제건설법연구회보다 늦게 2015년 4월 한국건설법학회가 창립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같은 달에 한국건설법무학회가 창립되었다.

학회, 한국재산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와 한국해사법학회도 있다.[25] 이처럼 법학에서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현상이 현저한데[26] 국제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세분화된 매매, 증권, 금융, 보험, 은행, 지재권, M&A 등을 모두 함께 다루는 것은 국내법의 세분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7] 더욱이 국제거래법학은 상응하는 국내법학회가 없는 국제경제법과 국제투자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학 내부적으로, 국제사법을 제외한다면,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법리를 찾기가 어려운 탓에 국제거래법학의 응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국제거래법 전임교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자면 다양한 국내법 분야의 교수들이 당해 분야의 국제거래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법학회 활동을 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내법 분야의 교수들은 국제거래법에 별로 관심이 없다. 대안은 국제거래법 전공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나 현재 국제거래법 전공교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공분야의 스펙트럼이 넓지도 않다.

근자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이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국제거래법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거래법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은 명확한데 문제는 우리 학계와 법률가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래도 이 분야가 굴러가는 것은, 다른 법학 분야와 달리 국제거래법학의 경우는 우리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이 하지 않더라도 영미의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이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 간의 거래나 분쟁에 외국 법률가들이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다. 종래 서울대 금융법센터는 금융법무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주관 하에 국제통상·국제상거래를 위한(양자를 별개로) 단기과정 또는 LL.M.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6. 2020년 국제거래법학회의 유고

2019년 말에 발발한 코비드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결과 모든 학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학회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학회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를 제외한다면 국제거래법학회는 2020년 중에는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 외에는 학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라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지금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25) 이는 현재 매우 세분화된 영역을 다루는 학회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특정 학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관련 학회들 간의 공동세미나 개최와 같은 협력이 필요한데 그 경우 발표 논문을 하나의 학회지에 묶어서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6) 맥락은 다르나 현실에 대한 진단은 같다. 남형두,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3호(2021. 9.), 83면.

27) 대부분의 국제거래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내거래가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별도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관련 국제법무를 다루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강의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박지원(註 21), 431면.), 그런 교육을 하자면 광의의 국제사법과 당해 분야의 국제거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 신토불이법학에 익숙한 국내의 많은 교수들은 우선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에 친근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못하는데 이는 국제거래법학회 31년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필자는 2020년 7월 당시 학회장에게 몇 차례 이메일을 보내어 활동을 촉구하였고 명예회장님들께도 이메일을 보내어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학회 회칙에 반하여 수석부회장도 없었던 탓에 수습하기도 어려웠다. 그나마 2021년 3월에 이르러 장승화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안강현 교수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학회활동이 재개되었음은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필자가 이를 적어두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Ⅳ. 기타 몇 가지 단상

1. 국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법원내 국제거래법연구회와의 공동 세미나

국제거래법학회는 법원내 국제거래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매월 6월경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에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28] 그런데 근자에는 해법학회가 노력한 탓인지 법원내 국제거래법연구회는 위와는 별도로 해법학회와 10월경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법원에 국제사건전담재판부를 두었으나(효시는 서울지방법원의 1994년 3월 국제거래 및 상사사건 전담부의 설치),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이 전담부를 확대하여 해사·국제거래전담부를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사사건이 국제사건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법원과 학계가 함께하는 포럼의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제해상사건은 국제거래법학회와 해법학회의 활동이 겹치는 영역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29] 근자에는 독립한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고서[30]도 간행되었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는 유럽에서는 BREXIT 이후 국제분쟁해결의 허브인 런던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와 별개로 국제분쟁해결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사분쟁해결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양대 중심인 뉴욕과 런던이 강력한 반세계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31] 급기야 우

---

28) 석광현(註 1), 64면. 하지만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29) 국제선박건조계약은 우리 법상으로는 해상법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법학회가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항공기금융을 다룰 수 있다. 선박금융과 항공기금융은 모두 국제거래법학회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임은 의문이 없다.

30) 사법정책연구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2021)(이재찬 집필).

31) Anthea Roberts,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Global Lab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115 AJIL, 1 (2021). 기타 "Global Lab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논의가 있었고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32]도 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언급한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자면 국제거래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영국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33] 영국 법원이 국제분쟁해결의 허브가 된 데는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준거법으로서 우위를 점하는 영국법의 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법이 준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즉 준거법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관할의 확보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관여하는 국제거래에 한해서 관할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자면 동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상사법원이 한 재판이 주요 국가들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공허한 논의가 될 것이다.[34] 이런 맥락에서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35]과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36]에의 가입을 검토하고 그에 더하여 불합리한 국내법과 대법원 판례[37]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心堂국제거래학술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거래법학회는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의 수상작을 국제거래법 분야와 국제경제법 분야로 번갈아 선정하고 있다. 국제거래분야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국제거래의 진작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心堂국제거래학술상은 전년도 1년 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공표되었거나 출간된 한국인의 국제거래에 관한 논문, 저술 또는 잡지 중에서 선정된 논문 등 1편에 대하여 시상하는데 법학논문만이 아니라 국제거래에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 최원목 교수가 제1회 수상한 이래 매년 수상작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 제14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자로는 덕성여대 김상만 교수가

Re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어 위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3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2020)(김정환 외 집필).

33) 실제로 다양한 국제거래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영국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국 당사자들에게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다.

34) 사법정책연구원(註 32)의 보고서는 이 점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5) 상세는 석광현,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11호(2005), 192면 이하; 장준혁, "대한민국에서의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채택방안-2019년 재판협약 성립을 계기로 돌아본 의의와 과제-", 안암법학 제61호(2020. 11.), 47면 이하 참조.

36) 상세는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19. 12.), 437면 이하;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2020. 12.), 3면 이하 참조.

37) 예컨대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등. 비판은 석광현,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문제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212면 이하 참조. 이런 판결 하에서 한국이 분쟁해결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緣木求魚이다.

선정되었고 수상작은 2020년 봄 출간된 저서인 "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이었다. 과거 무역입국의 기치를 내세우고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법률가들이 국제거래법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무역학자들(상학자들)이 종래 우리 기업들의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법률가들의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인 쟁점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38] 2021년에 수상자로 선정된 김상만 교수는 국제통상학과 교수라는 점[39]과 수상작이 법학 문헌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라는 의의가 있는데 이는 무역학(상학)을 하는 분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거래법학계의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영면하신 고 양영환 선생님의 권유로 오래 전부터 한국무역상무학회의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3. 국제규범 등의 공식 번역문 작성에의 참여

필자는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초기 매매협약, 인코텀즈, 신용장통일규칙과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들을 접하였다. 당시 그런 규범 내지 규칙들의 공식 국문번역이 없었음이 아쉬웠기에 공식 국문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0]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필자는 매매협약의 국문번역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였고, UCP 600(신용장통일규칙)의 공식 번역문 작성에 채동헌 변호사, 장상균 판사, 송창순 미국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였으며, 2016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공식 번역문 작성에 오원석, 최준선, 허해관 교수와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인코텀즈2020의 국문번역을 감수하였다. 오래 전에 막연히 품었던 소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2018년 5월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UN 국제상거래 규범집(제1권): United Nations Standards Towards the Harmonization and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38) 이 점은 석광현, "國際貿易去來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84면, 註 2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이헌묵 교수가 "무역계약실무: 무역계약서 작성실무부터 무역분쟁사례까지"를 간행하였는데 이는 국제거래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법학자의 단행본으로 신선하다. 상법 교수인 임홍근 교수님은 일찍이 무역거래법(1971년), 외국환관리법(1973년)과 무역신용장(1981) 등의 저서를 발표하는 등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독보적인 노력을 보였다. 신용장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林泓根, 荷換信用狀의 法的構造-독일法과 미국法에 의한 比較法的 接近의 試圖-(三知院. 1991).

39) 김상만 교수는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도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근자에는 영문논문과 저서도 열심히 발표하고 있다.

40) 필자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87면, 註 11에서 양영환·서정두(편저), 國際貿易法規-매매·결제·운송·보험·중재-, 제4판(2003)에 대하여 "오역이 없지는 않지만 이 책자는 주요 국제무역법규의 영문과 국문번역(공식번역문은 아니지만)을 수록하고 간결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저자는 이런 자료를 간행한 무역학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법률가들이 이런 과제를 무역학자들에게 맡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만 위 책자가 법률가의 참여를 통해 좀더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위 책은 매매·결제·운송·보험·중재 등을 함께 다룬 규범집이다. 그러나 오원석 교수님이 성균관대학에서 정년퇴임한 뒤에는 무역학(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약화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Selected UNCITRAL Texts (Bilingual English-Korean)"을 간행하였고 2020년에는 UN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을 간행하였다.[41] 이런 번역작업은 눈에 띄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작업이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어쨌거나 이런 작업을 통하여 공식 번역문 작성에 기여하였음에 작은 보람을 느낀다.[42]

Ⅴ. 나가는 말

지난 30년을 회고해 보니 세월의 빠른 흐름을 절감한다. 필자가 2022년 2월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1981년 8월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40년 동안 전반부에는 국제금융거래 등을 다루는 로펌 변호사로서, 후반부에는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서 살아 왔다. 그 기간 동안 전문성을 심화하였다. 전관들은 깍듯이 예우하면서도 전문성을 벼린 법학교수는 홀대하는 로펌들이 널린 사회에서, 전문성을 평가받고 발휘할 수 있었던 학교를 떠나는 마음이 무겁다. 그 과정에서 필자가 이룬 작은 성취가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필자의 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지만, 다소 변명을 하자면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에 대한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해 부족, 국제거래법 전임교수의 부족과 그리고 로스쿨 교수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 제약 등의 탓도 있다.

과거를 회고하면 ① 국제거래법은 주로 미국(제한적으로 영국) 판례와 법리를 소개하거나 무역학자들(상학자들)에게 맡겨져 있었고(무역거래의 경우, 다만 기타 대형거래는 국제거래를 다루는 로펌 변호사들이 관여하였지만), ② 국제사법은 협의로 파악되어 일본 또는 독일에 경도되었으며, ③ 국제민사소송법은 단편적으로 취급되었고, ④ 국제상사중재법은 주로 무역학자들(상학자들)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⑤ 국제도산법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5개의 국제법무 영역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들을 유기적 관련 하에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과거 각각 따로 놀던 위 5개의 영역을 우리 법의 시각에서 통합하여 '한국 국제법무'의 기틀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위 범위에 포섭되는 국제거래법 분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예컨대 국제금융거래 또는 국제지재권거래 등) 적어도 관심분야인 국제거래법 영역과 나머지 4개 영역[43]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외

---

41) 그러나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법무부, UN 국제상거래 규범집(제1권) (2018), 45면이 뉴욕협약의 국문번역에서 외교부의 오류를 답습하는 점은 유감임은 이미 지적하였다.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 제2권(2019), 570면, 註 1.

42)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번역에 참여한 결과 오원석 교수님으로부터 과분한 찬사를 들은 바 있다. 오원석 외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2018), 526면 참조. 이 기회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43) 예컨대 석광현, "國際的인 知的財産權 紛爭 해결의 문제점— 國際私法的 論點에 관한 試論 —",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17집(2000), 225면 이하(이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549면 이하에도 수정되어 수록되었다)에서 필자는 국제재판관할, 중재가능성과 준거법의 논점을 묶어서 논의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상호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가능성의 논점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과 연결된다. 필자는 "국제사법, 국제소송법, 국제중재법과 국제도산법"에 대한 이해를

국 법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44]

일찍이 1999년 '국제(상)거래법+국제사법'을 묶어 필자를 받아준 한양대 법대, 동일 조합을 수용해준 서울대 법대와 필자를 후하게 평가해준 학생들, 따뜻하게 대해준 동료 교수님들,[45] 필자가 회장직을 맡았을 때 집행부에서 수고해준 손승우 교수, 정홍식 교수, 이영종 교수와 허해관 교수와, 그밖에 지난 30년 가까이 필자의 道伴이 되어준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필자가 지난 세월 동안 학회 활동을 하면서 훌륭한 선후배들로부터 연구자로서는 물론 자연인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린다. 다만 어린 시절 明心寶鑑에서 '道吾善者是吾賊 道吾惡者是吾師'라고 배웠으나 실천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데이터,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등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이 국제화될수록 국제거래법학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계와 법조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학교를 떠나게 되어 심경이 착잡하다. 끝으로 필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포럼의 역할을 해온 국제거래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회고담을 마친다.[46]

'기본적 국제법무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은 어느 국제거래법 영역을 다루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석광현(註 1), 56면. 다만 영역에 따라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국제금융거래를 다룬다면 국제중재법의 중요성은 작은 반면에 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은 훨씬 크다.

44)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매매협약과 몬트리올협약 외에는 통일실질사법규범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무척 아쉽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상법 분야의 여러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탓이 크다.

45) 그 중에서도 한양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의 입사 동기인 교수님들과 입사 당시 양교에 재직 중이던 서울법대 33회 동기들에게 특히 감사한다. 2021년 8월 말로써 33회 동기들은 정년퇴임하였고 필자만 남았다. 해서 서울대 동기들(이용식, 남효순 교수)과, 그리고 한양대 동기들(최태현, 오영근 교수)과 각각 저녁을 함께하면서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46) 학회지인 국제거래법연구는 2015년도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학회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임회장이던 필자는 일부 임원들과 대전 소재 한국연구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음 해에야 등재지로 재승격될 수 있었다. 실질적 불이익은 없었지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제와 국제거래법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능력에 대한 의문만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2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로스쿨 국제거래법 교재의 공동집필을 위한 작업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국제거래법학회 30년사 회고담

제11대 회장
김 갑 유

내가 처음으로 국제거래법학회를 접한 것은 1990년말 대학원시절 지도교수이셨던 송상현 선생님께서 학회를 만드신다고 해서 어떤 학회인지도 잘 모르고 참석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나는 로펌의 3년차 변호사였고, 국제거래가 무엇인지 겨우 경험을 시작한 상태라 모든 논의가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었던 기억이 있다. 당대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 학회에 오셔서 여러가지 분야의 신기한 지식들을 공유해 주셨고 나는 신나게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렸다. 학계의 어른들과 선배님들을 뵙고 여러가지 지식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당시는 을지로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여서 밤늦게까지 세미나가 이어졌다. 그 즈음에는 나는 해상과 항공분야의 일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에 관해서 발표를 할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 발표가 논문으로 정리되면서 부족하지만 논문을 발표할 기회도 갖게 되었다. 나는 해외유학을 다녀온 이후에도 나름 꾸준히 국제거래법학회를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1999년 이기수 총장님께서 회장이 되시면서 학회 이사로 참여하게 되고 이어 김문환 총장님께서 회장이 되시면서 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학회분들이 적잖이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삼 나의 과오를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 그 후 바쁘다는 핑계로 학회 참여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었던 와중에 2015년 갑자기 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나로서는 너무 과분한 자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가지 실수와 과오를 범하면서도 그나마 직전 회장이셨던 존경하는 석광현 교수님의 지도편달을 받은 덕택에 근근히 회장직을 마칠 수 있었다.

이제 학회가 30년이 되었다고 하니 그 세월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새내기 변호사였던 내가 이제 33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흰머리도 나고 돋보기 없이는 책을 보기 힘든 나이가 되었다. 어쩌다 이래 저래 이사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회장의 영광까지 누리면서 국제거래법학회는 나의 변호사 경력과 세월을 함께 했다. 학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학회의 중심에서 학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고여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오는 역사를 꾸려오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30년은 어떤 일이 있을까? 국제거래법학회에도 내 인생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크게 성장해서 30년 후에는 큰 축하행사를 열었으면 하고 바래본다.